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총회장, 부총회장 2인(목사 1인, 장로 1인), 총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여 총회의 능률적인 회무 진행을 도우려는 데 있다.

제3조 (조직)

본 위원회의 위원은 11인(여성 1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직전 총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공천위원회에서 해당 총회 목사 회원 5인, 장로 회원 5인을 공천한다.

제4조 (위원 공천)

본 위원회 위원은 타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제5조 (임원)

본 위원회 임원은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으로 한다.

제6조 (임기)

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매년 2분의 1씩을 교체한다.

제7조 (공지)

본 위원회는 선거에 임하여 총회의 경과사항을 보고하며, 투표 전에 투개표 요령과 방법을 총회원에게 알린다.

제8조 (재량)

본 위원회는 제반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개정)

이 규정은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현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위원회는 선거관리 운영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1985년 9월 제70회 총회 제정
1986년 9월 제71회 총회 개정
1991년 9월 제76회 총회 개정
1993년 9월 제78회 총회 개정
1996년 9월 제81회 총회 개정
1997년 9월 제82회 총회 개정
2013년 9월 제98회 총회 개정
2016년 9월 제101회 총회 개정
2017년 9월 제102회 총회 개정
2018년 9월 제103회 총회 개정
2020년 11월 제105회 총회 개정